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 · 회신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지방예산분야 관련

1. 직원능력개발비 집행 가능여비

【질 의】

○○구의회에 소속된 속기사가 수기로 회의록을 작성하던 것을 컴퓨터를 이용한 속기록을 작성하고자 속기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관련 학원의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 또는 학원에 등록 수강신청할 경우 직원능력개발비로 지원이 가능한지?

회 신

공무원의 능력개발비는 소속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사설 어학원등에서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중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 대상학원 및 과목의 선택은 자치단체가 경비의 성격에 부합되게 운영하되, 필요한 사항은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련회계절차에 따라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부터는 동 기준액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바, 자치단체가 자체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나,

- 자치단체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반 경비는 공적인 분야에 형평성 있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직원능력개발비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인터넷 질의회신, 2004. 10. 17)

2. 행정동우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가능 여부

【질 의】

지방행정동우회가 보조사업 수행하는 경우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을 마련하려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1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의회에서 재의결한 지방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는데, ○○군조례제정이 이와 관련여부는?

회 신

○ 자치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에서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원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자치단체가 소관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행정동우회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는

- 보조금 지급대상 분야가 상기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요건에 부합되는 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지급여부의 결정은 자치단체의 보조금지급관련조례에 의거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및 당해 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참고로, 의정동우회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분쟁의 당사자인 ○○구와 ○○구의회간의 이견으로 볼 때,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말하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여부”를 존중하여 내려진 결론이라 사료됩니다.(재정정책과-82, 2004. 02. 16, 인터넷 질의회신, 2004. 10. 20)

3. 환경미화원 인부임 관련

3-1. 민간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인부임에 관하여

【질 의】

민간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대로 지급하라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지시와 관련,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2004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의 적용에 있어 2003. 12. 31까지 근무분에 대한 정산의 타당성 여부는?

회 신

먼저, 우리부가 매년 시달·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 동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고용하는 환경미화원의 인부임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으로서,
- 지역의 가로청소 등 환경미화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사무이므로 환경미화원을 고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따라 '87년부터 매년 우리부가 환경미화원 노조의 의견을 들어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와 대행계약에 의해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동 기준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아니며, 청소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우리부 예산편성기준의 준용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재정정책과-387, 2004. 03. 05)

3-2. 환경미화원 전직경력 가산에 대하여

【질 의】

현행 환경미화원의 근속년수 가산은 군복무를 마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전직 농촌지도사 경력을 근속년수에 가산하여 근속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회 신

환경미화원의 근속년수 가산은 일용인부 형태로 상용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보수현실화를 위하여 1년초과 계속근로자를 대상으로 30등급까지 1년 근속당 월 22,400원(일당의 100%)씩 연동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근복무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전국연합노련과 우리부가 협의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근속가산년수를 인정해 주고 있으나, 농촌지도사 경력 등 전직경력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재정정책과-837, 2004. 03. 25)

3-3. 환경미화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

【질 의】

○○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속 환경미화원의 근로시간을 08:00~8:00(토요일 포함)으로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1월당 60시간분(1일당 2시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토요일 오후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추가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데, 이의 적정여부는?

만약, 토요일 오후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예산편성기준상의 기본 2시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회 신

「2004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은 환경미화원 근로의 특성상 작업의 준비와 마무리 등 일정한 시간외근무가 상례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확보를 위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소요액 산출요령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시간이외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문제는 고용주인 당해 자치단체의 장과 환경미화원간의 고용계약 및 노동관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재정정책과-4374, 2004. 10. 06)

4.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관련

4-1. 세무업무관련

【질 의】

세무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지급이 가능한지?

회 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을 “관장업무가 경비지급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실·과 단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관리업무와 관련한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하더라도 세무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실·과(세무과, 세정과 등)가 아닌 다른 부서의 일부 공무원에게는 동 경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재정정책과-838, 2004. 03. 25.)

4-2. 예산업무관련

【질 의】

2004년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수립, 기금관리·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산업지원과 자금지원팀)에 대하여 예산담당공무원으로 적용하여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지급이 가능한지?

회 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국가의 운영내용, 그동안 운영하고 있는 경비지출의 계속성등을 감안하여 특정분야의 업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04년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의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로,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 전담조직 근무자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계가 별도의 전담팀(계)으로 설치된 경우)

따라서, 귀시가 질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관리·운영 등 개별적인 기금관련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를 예산담당공무원으로 적용하여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재정과-1761 2003. 10. 06)

4-3. 여론동향업무관련

【질 의】

○○구 인사담당에서는 우리구내 조직관련 각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데, 특정 업무수행활동비의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회 신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담 조직(담당 또는 팀)이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여론동향의 전담조직이라 할 수 없는 인사팀은 그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질의회신 2004. 10. 17)

4-3. 관재업무관련

【질 의】

우리군에는 관재업무 부서로 재무과안에 관재담당팀을 두고 있으며, 그 주요업무로는 국·공유 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2005년부터 신설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국·공유 재산관리 담당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청사관리 담당자까지도 지급이 가능한지?

또한, 넓은 공유림을 관리하는 임업경영과안에 공유림(도유림, 군유림) 관리 담당자가 별도로 있는데, 이 같은 경우 공유림 관리담당자에게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지급이 가능한지?

회 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행정자치부훈령제116호)에 의해 2005년도부터 시도 및 시군구 관재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는 바,

그 지급대상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전담부서에서 국·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사등의 재산의 유지관리와 임업부서 등의 담당공무원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인터넷질의회신 2004. 10. 20)

5. 민간자본보조관련

【질 의】

자치단체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고, 보조사업자가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치단체와 보조사업자간, 보조사업자와 시공사간 계약관계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준용)대상이 되는지?

회 신

보조금이란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공공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교부하는 지원금으로서,

자치단체의 경우는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의 절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자치단체와 보조사업자간에는 계약이 아닌 예산집행의 한 형태라고 할 것이며,

보조사업자와 시공사간의 계약관계는 원칙적으로 공법관계가 아닌 사법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시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교부조건을 제시하였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재정정책과-640, 2004. 03. 16)

6. 보조금 상계처리와 대하여

【질 의】

보조금의 상계처리와 관련하여 과년도분(2003년도 과다지급분)에 대하여 2004년도 보조금신청분에서 상계처리(감액)가 가능한지?

회 신

국고보조금은 통상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중앙관서의 장이 통보하는 “교부결정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환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명령을 하였다면,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보조사업자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일시정지 또는 상계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과 같이 상계처리여부는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재정정책과-640, 2004. 03. 16)

6. 의회경비관련

6-1.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하여

【질 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연말 불우이웃돕기성금 명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와 이러한 것이 공적인 의정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지?

회 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 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회의비, 공청회 개최경비, 각종 행사시의 위로금·격려금 등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를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 경비에 포괄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적인 활동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의장 또는 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집행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원칙 아래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귀 의회에서 책임지고 판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재정정책과-840, 2004. 03. 25)

6-2. 의회경비의 초과한도액에 관하여

【질 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지방의회의원의 해외여비 편성한도액 및 추가편성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러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해외출장수요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해외여비 편성한도액의 상향조정을 건의

회 신

우리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간·단체간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경비와 일정한 기준없이 경비를 운영할 경우 과다한 예산계상이 우려되는 경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지출상한액을 정하여 균형 있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관련경비, 사회단체보조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편성·집행은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제시한 자치단체별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만약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한 경우에는 감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 3호에 의하여 교부세 감액조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여비 편성한도액의 증액건의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편성기준 설정시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재정정책과-4336 2004. 10. 05)

7. 예비비 집행에 관하여

【질 의】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삭감한 용도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회 신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대로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당해 경비의 지출이 예측된 사항으로서 구 의회가 이를 삭감한 경우라면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추경을 통해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재정정책과-691, 2004. 03. 20)

8. 기관업무추진비 초과편성 등에 관하여

【질 의】

- ① 원전사업 등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별도예산편성이 가능한 지?
-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한 지?
- ③ 원전사업 등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별도예산편성이 가능한 지?

회 신

○ 질의 ①에 대하여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이므로 특정업무수행을 수행하기 위해 기준을 초과하여 예산편성할 수 없습니다.

○ 질의 ②에 대하여

- 세입세출외현금이란 공공시설손실부담금,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차액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법률에 의한 예치금 및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질의 ③에 대하여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다른 경비에 비해 포괄적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의 낭비를 억제하고, 자치단체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 산식에 따라 자치단체별 상한액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국가단위 행사 개최, 재난지역 선포 등 특별한 수요가 발생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를 거쳐 일부 증액편성이 가능합니다.(재정정책과-3704, 2004. 08. 28)

9. 시설부대비 관련

9-1. 시설부대비에서 국외여비 집행가능 여부

【질 의】

감독공무원이 관련업무 추진을 위해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회 신

계약체결, 물품 검수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는 당해 공사의 부대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시설부대비에서 편성, 집행하도록 한 것으로서,

계약체결 및 물품검수 등을 위해 국외출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단순히 연관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시설부대비 사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인터넷 질의회신, 2004. 10. 17)

9-2. 시설부대비에서 각종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집행 가능 여부

【질 의】

공영주차장 설치 실시설계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과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이 국내 타지역 유사한 우수시설을 견학하고자 할 경우 시설부대비로 견학공무원의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한지

회 신

시설비'목에서의 여비집행은 당해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 감독경비, 물품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므로,

각종 자료수집 등을 위한 출장여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인터넷 질의회신, 2004. 4. 10)

10. 민간상가의 가스폭발 피해비를 예비비로 집행가능 여부

【질 의】

가스폭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가에 대하여 예비비로 보조금이나 보상금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목이 "시설비"인 예산을 사용하여 민간의 가스폭발 피해 시설물(상가)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회 신

지방예산의 편성 원칙상 일회계년도의 모든 세출은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지방재정법 제29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 할 것이나,

- 예산편성시기와 사업집행시기가 서로 다른 관계로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세출예산액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도 꼭 필요한 경비는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비비과목을 두고 있습니다.

- 다만, 예비비가 낭비적인 경비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 및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는 집행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사항은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가스폭발로 피해를 입은 상가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등에서 정의하는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설비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시설비를 의미하는 바, 질의하신 사례의 민간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에 대하여 시설비로 지출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인터넷 질의회신, 2004. 10. 17)

11.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여행경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질 의】

통일기원 산업시찰을 위하여 북한의 금강산을 방문하려 하는데 여행경비의 적정 예산편성과목은?

회 신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구조와 설정 규정에서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여행경비에 대하여 국내여비(202-03)과목에 편성하되,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외 여비 기준액(나등급)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질의회신, 2004. 10. 20)

12.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하여

【질 의】

○○시에서는 2005년도에 공익법인(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 예산편성(출연금)이 동재단의 설립인가 이전에 가능한 지, 아니면 반드시 설립인가이 후에 가능한 지?
- 또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연금으로의 예산편성이 가능한 지?

회 신

자치단체의 출연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적용대상으로, 「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과목구분과 설정」의 출연금(306목) 설정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기준은 설립인가 여부로 판단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설립인가 이전에는 출연금으로의 예산편성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법령에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다면 예산의 편성 및 출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인터넷 질의회신, 2004. 10. 20)